

2015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3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1. 6.(화) 12:00~15:00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플럼룸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외부전문가 및 동문 : 백창현(위원장), 양호경(부위원장), 박광우 위원
 - 학교대표 :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노경희, 양기원, 최광종 위원

2. 회의 안건

-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3. 전차 회의록 낭독 : 예산과장

위원장은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함

4. 회의 내용

- 회의 내용
 - 학부생 대표인 주무열 위원 사퇴로 노경희 위원이 참석
 - 2015학년도 제3차 등심위 주요 논의 사항 낭독
 - 2015학년도 법인회계 재정전망 보고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 대학측: 학부생 주무열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 노경희 위원이 참석하였는데 이견이 없다면 위촉 절차는 사후에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 학생측: 총학생회 운영 위원회에서 주무열 위원을 노경희 위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음.

<대학측과 학생측이 노경희 위원으로 교체 합의하고 회의 진행 결정>

- 학생측: 전차 회의록이 어느 측 의견을 표한 것인지 불분명함. 2014 학년도 2학기 대학원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등심위 지침 제정에 대하여 대학측과 학생측 의견을 모으자는 내용 및 외부 인사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 3차 회의에서 등심위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표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시 국가장학금 유형2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반영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회의록에 누락됨.
- 대학측: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장학금 유형2 지침이 제정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 수치에 대해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음.
- 학생측: 14년도 회의록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대학측과 학생측 의견을 모두 기록했었음. 1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면 좋다고 생각됨.
- 대학측: 양측을 구분하여 기록하되, 합의한 부분은 공동 합의 내용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음. 14년도 2학기 대학원 등록금 책정은 타 전공 등과 동일한 금액으로 비교하여 책정된 것이기에 논란이 될 수 없음. 3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을 종결하겠다는 ‘합의’ 표현은 ‘노력’으로 정정하겠음.

<기록 방식 및 14년도 2학기 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학생측도 동의함>

- 대학측: 규정 제정 등의 문제는 등록금 책정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2차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학생들의 규정 제정 초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전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3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율이 합의되면 각자 규정 초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함.
- 학생측: 학생측이 초안을 만들어서 자료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요청함.

<2차 회의록 수정·보완을 전제로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기로 함>

- 대학측: 3차 회의자료 설명
- 학생측: 학생측 등록금 책정안 설명(5% 인하 비율 제시). 대학원생

에 대한 맞춤형 장학금 및 월정 생활비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근로장학금 시급 인상에 대한 의견 제시함.

- 대학측: 대학원생의 장학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함. 교육부 담당자 방문시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음.
- 학생측: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면 좋다고 생각함. 근로 장학금을 시간당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봄. 직원 복지비 지급과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지원비를 볼 때 대학측 예산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해석됨.
- 대학측: 현 시점에서 장학금 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15년도 예산에는 추가 반영이 어려움. 장학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임. 국가장학금 유형2 수혜 여부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직접적으로 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학생측 자료 중 교외장학금의 경우, 개인 역량에 따라 장학금 수혜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으나 독지가 등 발전기금이나 관악회(동창회)에서도 교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수혜자의 노력과 의지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임. 또한 언론에 보도된 직원 복지비 문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의 예산이 많다는 해석은 잘못된 생각임.
- 학생측: 학생들의 여론을 말씀드리는 것임. 미대 전공 폐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26억원을 복지비로 지급하고 교육연구지원비로 약 100억원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안됨.
- 대학측: 미대 전공 폐강은 해명 보도가 나갔으며, 등심위 차원의 논의 대상이 아님.
- 학생측: 장학금 지급 논의 등을 회의록에 반영하면 좋겠으며, 대학별 교직원 임금 비교는 사립대와 비교하면 안되며, 국공립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대학측: 울산과기대와 비교할 경우에도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가 법인화를 하였기에 학생측이 제시한 자료 중 지방 국립대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임. 서울대가 세계적 대학과 비교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동결 또는 인하로는 향후 세계적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학생측: 등심위에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음. 대학원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명시화가 되면 좋다고 생각함.
- 대학측: 현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함.
- 학생측: 학생측의 요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노력에 동의한다는 점을 회의록에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함.(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기로 동의함) 재정전망 보고에서 대학성과목표 달성이 최우선인데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함.
- 대학측: 대학 성과 목표는 교육과 연구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성과 지표의 향상이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별개가 아님.
- 학생측: 예비비가 안쓰인다면 등록금 인하 요인 및 장학 사업에 추가로 쓰일 수 있는 것인가? 예비비가 어디서 세입되는가?
- 대학측: 예비비는 긴급 필요에 의해 총장 사업 및 각 기관의 긴급 용도에 쓰임. 대부분의 학교에도 예비비가 편성됨. 예비비는 등록금에서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함께 편성된 금액이며, 예비비를 장학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학생측: 자료 제공이 안되어 1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한 논의가 어려움.
- 대학측: 현재 등록금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편성 작업 중이므로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그 외 자료는 모두 제공하였음. 자료는 제공을 요구하는 측에서 자료의 필요 이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등심위의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본부측 자료와 학생측 요구자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회 등 상위 기관에 보고한 자료이기에 공시된 자료임. 현 시점은 학교측과 학생측의 등록금 책정 비율에 대한 협의를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측: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시 학교 운영이 힘들다라는 검토 의견을 주면 좋다고 생각함.

- 대학측: 지난 2차 회의때 논의한 부분과 지침 제정에 대한 부분, 위원장 임기, 학생측 요구와 재정 상황 및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고려하여 최종 0.27% 인하를 제시.
- 학생측: 3% 인하를 제시함.
- 대학측: 양측 의견이 상이하야 투표를 제안함.
- 학생측: 작년보다 등심위를 조기 개최하였으며, 예산안 없이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임. 0.27%보다 인하가 어렵다면 장학금 등 장학복지위원회에서 근로장학금을 국가장학금만큼 인상하는 것을 추가 요청함.
- 대학측: 장학금 관련 부분은 현 상황에서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학생측: 재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위 안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함.
- 대학측: 장학복지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함. 등심위에서 단가 인상 등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 사항임. 또한 15년도 예산에 장학금을 추가 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장학생수와 수혜액 등 근로장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 학생측: 노력은 했지만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음. 0.27% 인하를 하더라도 장학금 확충이 실현가능한가?
- 대학측: 장학금 확충은 총장 공약 사항임. 여기서 결정이 되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측 의견을 존중하겠으며 상호 신뢰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겠음.
- 학생측: 대학측 입장에 공감함. 다만, 위 논의들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위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임. 0.27%인하에 학생측 의견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면 좋겠음.

<학생측 의견에 동의하며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함>

- 학생측: 추가 인하가 가능한가? 3차 회의록 확인 및 협의추천 위원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3차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최종 0.3% 인하를 제안함.

- 대학측: 규정 심의 등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기에 회의록 확인은 추후 할 수 있으며, 다른 안건이 발생 시 등심위는 개최될 수 있기에 소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0.3%인하에 만장일치로 합의>

<장학금 정책에 대한 조건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합의함>

- 학생측: 회의록에 교내근로장학금 지급 인상 및 정원 증가를 기록하는 것을 제안함.
- 대학측: 학생측 의견에 대해 대학측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회의록에는 ‘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는 표현으로 기록하겠음.
- 학생측: 차기 회의에는 협의추천 위원 문제는 제외하고, 회의록과 지침 제정 문제를 논의하면 좋겠음.
- 대학측: 협의추천 위원 문제가 중요하기에 현 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에 협의추천 문제를 논의하면 좋다고 생각함. 차기 회의에서 지침 제정 문제와 협의추천위원 문제를 논의하여 15학년도 등심위를 종결하기로 제안함.

<차기 회의를 2015년 1월 13일(화) 16:00에 개최하기로 합의>

2015. 1. 6.